

인천광역시서해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hae.go.kr>

선

기관의장

람

제2019호 2026. 8. 6.(목)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1772호 빈집정비사업 무상임대주택 입주희망자 모집
공고 ——— 1
- 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1815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
- 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1816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25

발행 : 인천광역시서해구

편집 : 홍보정책과 [032-560-4142]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1772호

빈집정비사업 무상임대주택 입주희망자 모집공고

인천광역시 서해구에서는 주택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무상(최소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임대대상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주희망자를 모집합니다.

2026. 8. 3.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1. 신청기간: 2026. 8. 3. ~ 2026. 8. 18.(화) 18시 까지 (15일간)
2.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 거주자이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순위	입 주 자 격	증빙서류
1순위	대학생	· 재학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2순위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3순위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4순위	(예비)신혼부부	· 예식장 계약서(예비부부 검증용 자료),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예비신혼부부는 6개월내 결혼 예정인 부부, 신혼부부는 결혼 7년 이내인 부부
5순위	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예술인	· 청년창업자는 사업자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 청년예술인은 예술활동증명서 1부.(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인증) - 주민등록초본 1부. ※ 모집공고일 기준 만19세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3. 신청방법

- 접수처: 인천광역시 서해구 서곶로 299(심곡동, 서해구청 제2청사), 3층 주택과 [☎ 032-560-4593]
- 신청방법: 입주신청서(붙임1) 및 증빙서류와 (붙임3)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구비 후 직접방문(방문접수는 근무시간에 한함) 또는 팩스(☎ 032-560-2770)로 신청
- (※ 팩스 신청 시 반드시 유선으로 도착 여부 확인 필요하며 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4. 입주자 선정방법

-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입주 우선순위 결정
 - 1순위 입주 우선순위는 신청인의 인천광역시 거주기간이 오래된 사람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인천광역시 거주기간이 오래된 사람)
 - 1순위 입주 적합 대상자가 없는 경우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순서대로 모집하되,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인천시 연속 거주기간이 오래된 사람 선정
- 입주예정자 사정상 미입주를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임대주택별로 3배수 모집
 - 예비입주자 결정은 신청 임대주택별로 1순위가 우선이며, 2순위, 3순위, 4순위 순서대로 모집
 - 예비입주자의 입주자격 유효는 금회 임대주택에 한해 공고일부터 1년간 유지됨

5. 결과발표

- 일 시: 2026. 8. 21.(금) 15:00 이후
- 방 법: 당첨자와 예비당첨자에게만 개별 통보(유선)하며, 미당첨자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6. 입주가능(예정)일: 입주자 결정 이후 즉시(임대자와 협의 후 결정)

7. 임대주택 현황

연 번	위 치	모집 세대	임대 현황				임대료(만원)		임대기간
			구 조	해당층	방 수	면적(m ²)	보증금	월세	
1	인천 서해구 석남동 109-59 번지 풍성빌라 4동 403호	1	철근콘크리트구조	4	3	31.69	300	-	3년

8. 유의사항

- 위 임대주택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와 주택소유자가 협약을 통해 3년간 (예비)신혼부부, 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예술인, 대학생,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에게 임대하기로 약정한 무상 임대주택임
 - * 임대기간 기준은 최초 임대차 계약한 날로부터 3년을 말함
- 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결과는 서해구와 주택소유자간의 협약을 실현하기 위한 임의방식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기타 관계 법률에 의한 효력이나 권리관계와 무관하며, 주택소유자와 별도 협의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서해구는 위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며, 시설물의 유지관리 권한이 없고 주택소유자가 건축물 관리를 함
- 임대차계약은 건축물소유자와 입주자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함

9. 기타 문의사항: 서해구청 주택과 주택정비팀[☎ 032-560-4593]

10. 입주신청서식 및 입주설명서: 서해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 붙임 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1부.
2. 입주 설명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끝.

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2026-1815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8. 6.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 개정이유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근거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7조의2로 이관(2026.10.15. 시행)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함.

○ 주요내용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위원의 구성 다양화 및 연임 제한 완화

○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참조: 총무과, 전화 560-3022, 팩스 560-2710, 이메일 steelpar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근거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7조의2로 이관(2026.10.15.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 위원의 구성 다양화 및 연임 제한 완화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해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를 “「지방자치법」 제17조의2”로 한다.

제5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를 “「지방자치법」 제17조의2”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민자치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명

제8조제9항 본문 중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를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한 차례”를 “두 차례”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1. 주민자치회 의결사항의 집행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및 수탁사업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회 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③ 감사는 연 2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감사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사 결과는 개인정보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인 정보를 제외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감사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활동, 교육, 연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주민총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및 「공직선거

법」에서 정한 정치적 중립의무와 선거운동 제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 중 “「특별법」 제40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한 차례”을 “두 차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연임 대상자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회의 출석률
2. 분과위원회 활동 참여도
3. 주민총회 및 자치사업 참여 실적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특별법 제40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으로, “구청장에게 발견된”을 “구청장에 의해 확인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제2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8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해촉을 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청문 절차를 준용”으로 한다.

1.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29조제5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디지털 주민자치 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온라인회의, 전자회의, 전자투표, 모바일 주민의견 수렴 등 디지털 주민자치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확인, 중복투표 방지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 주민자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주민총회의 사전투표 및 주민의견 수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시행규칙 등) ①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운영세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 및 과정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주민 간 갈등 발생 시 조정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구성 및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
5.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6. 주민총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계약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주민자치회는 확정된 운영세칙을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치회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2026년 12월 31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자치회장 및 주민자치회 위원의 다음 임기는 제9조제4항 및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끝난 후 호선되는 자치회장 및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9조제4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다.

제3조(자치회장 및 위원의 연임 횟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치회장 및 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이 조례 시행 전의 자치회장 및 위원의 임기 수행 횟수는 연임 횟수에 합산하여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7조의2----- ----- ----- ----- ----- ----- -----.
제5조(기능 및 권한)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4. (생략)	제5조(기능 및 권한) ----- -- 「지방자치법」 제17조의2-- ----- ----- -----.
제7조의2(위원선정위원회) ① (생략) ② 선정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선정을 위한 해당 동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의2(위원선정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3. (생 략)

4. 동 소재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1명

③ ~ ⑤ (생 략)

제8조(위원의 선정) ① ~ ⑧ (생 략)

⑧ · ⑨ 삭 제

⑨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 ③ (생 략)

④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만료 또는 해촉된 날부터 4년 이내에 자치회장으로 호선될 수 없다.

⑤ · ⑥ (생 략)

제11조(감사) ① (생 략)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

1. ~ 3. (현행과 같음)

4. 주민자치 분야의 학식과 경협이 풍부한 전문가 1명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의 선정)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 주민자치회 -----
-----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
----- . -----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두 차례 -----

----- .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1. 주민자치회 의결사항의 집행 및 이행에 관한 사항

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8조(위원의 의무) ①·② (생략)

③ 주민자치회 위원은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2. 보조금 및 수탁사업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회 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③ 감사는 연 2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감사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사 결과는 개인정보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인 정보를 제외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감사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

에 참석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9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0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

건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활동, 교육, 연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주민총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및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정치적 중립의무와 선거운동 제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정치적 중립) -----
----- 「지방자치법」 제17
조제2제7항-----

-----.

제20조(위원의 임기 등) ① -----
----- 두 차례
-----.

할 경우에도 제8조의 선정 절차를 따른다.

② (생략)

<신설>

③ (생략)

제22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생략)

2. 제7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의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사유가 구청장에게 발견된 경우

3. (생략)

4.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

② (현행과 같음)

③ 선정위원회는 연임 대상자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회의 출석률

2. 분과위원회 활동 참여도

3. 주민총회 및 자치사업 참여 실적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2조(위원의 해촉) ① -----
위원이 다음 각 호의 -----
----- 경우
에는 -----.
<후단 삭제>

1. (현행과 같음)

2. -----

구청장에 의해 확인된 -----

3. (현행과 같음)

4. -----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구청장에게 발견된 경우

<신 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에
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
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생 략)

③ · ④ (생 략)

⑤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사
유로 해촉을 하려는 경우 「행
정절차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사용료 등) ① ~ ④ (생
략)

⑤ 제2항에 따라 동장이 징수한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세입으로 처리하고, 주민자치회

구청장에 의해 확인된 -----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
인된 경우

② -----

-----.

1.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
7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
무를 위반한 경우

2.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
8항-----

3.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는 「행정절차법」의 청문 절차
를 준용-----.

제29조(사용료 등) ① ~ ④ (현행
과 같음)

⑤ 제1항-----

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제40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밖에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의 위임을

-----.

제34조의2(디지털 주민자치 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온라인회의, 전자회의, 전자투표, 모바일 주민의견 수렴 등 디지털 주민자치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확인, 중복투표 방지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 주민자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주민총회의 사전투표 및 주민의견 수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제40조(시행규칙 등) ①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의 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

받아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다.

② 제1항의 운영세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 및 과정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주민 간 갈등 발생 시 조정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구성 및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
5.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6. 주민총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계약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주민자치회는 확정된 운영세칙을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 제17조의2(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탁한 사항
- 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이 위촉한다.
- ⑤ 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 ⑥ 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자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⑨ 자치회는 그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⑩ 자치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4. 12. 30.>

[전문개정 2012. 10. 22.]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
 -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4. 12. 30.>
- [전문개정 2012. 10. 22.]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사유) 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급박한 위해의 방지 및 제거 등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
2.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견청취의 기회를 줌으로써 처분의 내용이 미리 알려져 현저히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예상되는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실이 실험, 계측, 그 밖에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경우

5. 법령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사용료 등 금전 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4. 7. 28.]

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2026-1816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8. 6.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주민자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지역 삭제, 오탁자 수정

○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참조: 총무과, 전화 560-3022, 팩스 560-2710, 이메일 steelpar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주민자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지역 삭제
- 오탁자 수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인천광역시 서해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개”를 “4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수강료 환불 범위 기준(제20조제2호 관련)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시행규칙 제20조 제2호에 따른 환불 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환불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환불 대상 학습비 (가목에 따라 산출된 환불 대 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환불금액의 산정은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권역별 운영) 자치센터의 강좌 프로그램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이 하 “구”라 한다) 전역을 <u>5개</u> 권 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 다. 1. ~ 4. (생 략) 5. <u>제5권역(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아라동)</u>	제12조(권역별 운영) ----- ----- ----- ----- <u>4개</u>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삭 제></u>